

『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
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
법령해석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 운영
 - 당 초 : 필요시 배출 가능
 - 변 경 : 일몰 후 ~ 일출 전(20:00 ~ 익일 06:00)로 지정

4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제2항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(환경부. 2003. 7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 의해
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
하는 내용으로서
-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도움이
될 것으로 판단되나,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
준수를 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